

의안번호	2216895
의 퇴 인	장철민의원
회 답 일	2026. 6. 18.
추계번호	26B0973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특구육성종합계획)	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(제2항) <u><신 설> 3의2. 특구의 대학·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</u> <u><신 설> 6의2. 특구의 대학·연구소 및 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</u>	의무규정
2	안 제6조의2(특구개발계획)	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(제2항) <u><신 설> 8.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</u>	의무규정
3	안 제12조의2(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활성화 지원) 신설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의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(제1항) 1. 테스트베드의 구축·운영 2. 테스트베드 제공 대학·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지원 3. 기술료 감면,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4. 그 밖에 특구 내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부는 특구 내의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테스트베드를 특구 내 입주기업체·입주기관에 개방·활용하게 할 수 있다.(제2항)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. 정부출연연구기관 3.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	재량규정
4	안 제12조의3(연구개발서비스의 지원) 신설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구의 대학·연구소 및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5	안 제12조의4(해외진출 지원) 신설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구의 대학·연구소 및 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의 대학·연구소 및 기업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6	안 제34조(특구의 관리권자 등)	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(이하 “특구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(제3항) <u><신 설> 4. 산업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</u>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(특구육성종합계획)	•미대상 - 개정안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‘특구의 대학·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·국제협력·해외시장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’을 포함하고, 특구개발계획에 ‘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에 관한 사항’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현행 행정력 및 예산 내에서 수행가능하다는 의견이므로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2	안 제6조의2(특구개발계획)	
3	안 제12조의2(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활성화 지원) 신설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4	안 제12조의3(연구개발서비스의 지원) 신설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5	안 제12조의4(해외진출 지원) 신설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6	안 제34조(특구의 관리권자 등)	•미대상 - 개정안은 특구관리계획에 ‘산업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’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특구관리계획에 ‘산업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2. 상세 사유

□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활성화 지원(안 제12조의2)

-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‘테스트베드의 구축·운영, 테스트베드 제공 대학·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지원, 기술료 감면,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등’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참고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 내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및 지원(신기술실증특례 수요발굴 및 운영, 참여기업 지원,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)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음

[표 1]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지원 사업 현황

사업명	사업내용	(단위: 백만원) 예산(2026년)
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지원 (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운영)	특구 내 혁신적인 신기술 창출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및 지원 - (수요발굴) 신기술 실증특례 수요발굴, 심층상담 및 컨설팅 지원 - (정책분석 및 법률 컨설팅) 정책동향조사·분석 및 실증특례 운영 고도화 연구성과 분석, 신청과제에 대한 법률·기술 상담 등 지원 - (전문위원회 운영) 실증특례 지정, 연장, 취소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이견 조정을 위한 실증특례 전문위원회, 검토위원회 운영 - (책임보험 가입지원) 실증으로 인한 물적·인적 손해 발생을 대비하여 책임보험 가입의무 부여 및 20백만원/연 이내 책임보험료 지원 등	1,620
연구개발특구역성	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-창업-성장-R&D 재투자자 선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 육성 - (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) 특구 공공연구이 보유한 국가전략기술·딥테크 분야 역량을 특구 기업과 연계 - (특구 혁신성장 스케일업 지원) 특구가 지역 혁신의 중심점 역할수행을 통해 특구를 지역 특화 창업 및 실증 스케일업 거점으로 육성 - (글로벌 부스트업 프로젝트) 혁신 기술 중심의 글로벌 시장 확장에 대응하여 국내의 우수한 창업·연구소기업의 기술 기반 현지 시장 진출 및 정착을 지원 - (강소특구 육성) 강소특구 내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-창업-성장이 선순환 기초지자체 단위 소규모, 지역 주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- (연구소기업전략육성) 국가전략기술이 딥테크 연구소기업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단계별 경쟁형 지원을 통해 기술-시장 간극 (Gap-bridging) 해소 지원 등	167,343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(II-1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‘테스트베드의 구축·운영, 테스트베드 제공 대학·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지원, 기술료 감면,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등’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, 기존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나,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, 현 시점에서 향후 실시될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연구개발서비스의 지원(안 제12조의3)

-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의 대학·연구소·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,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－ 연구개발서비스¹⁾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, 연구개발 기획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
-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특구의 대학·연구소·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서비스의 활용을 촉진·지원하는 시책의 내용, 지원 대상 및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참고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연구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음

[표 2] 연구산업육성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내용	예산(2026년)
연구산업육성	연구산업 기업의 성장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R&D 생산성 제고, 개방형 혁신 촉진 및 양질의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- (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사업) 주문연구 기업의 단계별 성장 지원, 연구지원 서비스 전문기업 및 시작품 제작 전문기업 육성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서비스 시장 확대 - (연구산업체계구축사업) 연구산업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연구, 연구산업 기업의 제품·서비스 홍보를 위한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연구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- (미래연구개발서비스) 새로운 연구개발서비스 분야의 新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선점	13,451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(II-1)

1) 안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의2. “연구개발서비스”란 「연구산업진흥법」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*의 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
* 「연구산업진흥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연구산업”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.

가.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
 나. 연구개발 기획,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,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·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

□ 해외진출 지원(안 제12조의4)

-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의 대학·연구소·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의 대학·연구소·기업과의 국제협력을 촉진·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,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특구의 대학·연구소·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을 촉진·지원하는 시책의 내용, 지원 대상 및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참고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음

[표 3]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지원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내용	예산(2026년)
국가간협력 기반조성	국가간 과학기술 교류·협력기반 확대를 위해 양자·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공동연구, 인력교류, 협력센터 및 협력활동 등 국제협력사업 추진 - (공동연구) 정상, 장·차관 등 고위급 회담 합의에 따라 해외 상대국과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 수행 - (인력교류) 국외 연구자와의 장·단기 교류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연구자 네트워크 확대 및 공동연구 추진 기반 조성 - (협력센터) 해외 과학기술협력의 거점으로 해외 현지 국가와 국내 산·학·연과의 해외 협력활동 지원 등 - (협력활동) APEC, ASEAN, OECD 등 국제기구와의 다자협력 및 한반도 과학기술 협력사업 수행	50,934
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략 강화	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지속·발전시켜 연구성과를 확산하고, 국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미래 현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지원 - 기조성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지속·발전시키고자 중규모 국제공동연구를 후속 지원하여 기초·응용 단계 R&D 협력 강화 *지원분야: 12대 '국가전략기술' 중 민간주도 기술혁신분야(반도체·디스플레이 등)를 제외한 8대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	2,250
해외우수 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	국내·해외 Top-tier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동연구, 인력교류 등을 수행하는 '지속 가능한 협력플랫폼' 구축 등 - (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) 선진국 및 개도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기초·원천 기술 및 우수인력 확보 지원 - (Top-tier 연구기관 간 협력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) 국내·해외 Top-tier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동연구, 인력교류 등을 수행하는 '지속 가능한 협력플랫폼' 구축	30,100

사업명	사업내용	예산(2026년)
산업기술 국제협력	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, 기술인력·정보 교류 등 전략적 기술협력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리더십 확보 및 세계 시장 진출 지원 － (국제공동기술개발) 양자협력국과 중대형 프로그램 본격화 및 다자협력 플랫폼 내 위상 강화에 따른 우리주도의 전략적 분야 국제 기술협력 활성화 안정적 운영 － (국제협력기반구축) 기업의 해외 파트너 발굴, 협력수요 확보, 연구기획, 글로벌 시장진출 등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협력기반 지속 마련 － (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) 초격차 급소기술 및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 연구기관에 협력센터 추가 설치 및 이를 활용한 국내기업의 글로벌 R&D 지원 － (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)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R&D지원을 통해 국내 기술기반 및 혁신역량 부족으로 자체 개발이 어려운 첨단 선도기술의 유입 및 국내중소중견기업의 R&D 역량 고도화	232,178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부 소관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(II-1)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

[참고자료] 연구개발특구 현황

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)

□ 특구 개요

- (목적) 연구개발특구를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여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
- (특구 지정) 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출 및 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, '05년 대덕특구 지정 후, 6개 광역특구*, 13개 강소특구**로 확대
 - (광역특구)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(출연연 3개 이상), 대학 3개 이상 집적화, R&D 투자·특허 비중 높은 지역*
 - * 광주('11), 대구('11), 부산('12), 전북('15), 강원('25)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정
 - (강소특구) R&D 역량, 기술특허 등 핵심역량을 보유한 1개 이상의 기술핵심기관 (대학, 출연연 등)이 소재한 지역*
 - * ('19) 안산, 김해, 진주, 창원, 포항, 청주 / ('20) 울주, 천안·아산, 군산, 구미, 홍릉, 나주 / ('22) 인천(서구)

구분	지정	범 위	총면적	특화 분야
광역 특구	대덕	'05.07 대전시 유성구 등 일원	49.7km ²	IT, 나노 융복합, 바이오 등
	광주	'11.01 광주시 및 장성군 일원	18.6km ²	친환경자동차 부품소재 등
	대구	'11.01 대구시 및 경산시 일원	19.4km ²	의료용 융복합기기 등
	부산	'12.11 부산시 강서구 등 일원	12.6km ²	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등
	전북	'15.08 전주시, 정읍시, 완주군 일원	17.3km ²	농생명 융합, 융복합소재부품 등
	강원	'25.12 춘천, 원주, 강릉 일원	11.7km ²	바이오, 디지털헬스케어, 반도체 등
강소 특구	안산	'19.08 안산 상록구, 단원구 일원	1.73km ²	ICT융복합 부품소재
	김해	'19.08 김해 주촌면, 풍유동, 명법동 일원	1.13km ²	의생명·의료기기
	진주	'19.08 진주 가좌동, 충무공동 등 일원	2.17km ²	항공우주부품·소재
	창원	'19.08 창원 성산구 일원	0.82km ²	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
	포항	'19.08 포항 남구, 흥해읍 일원	2.72km ²	첨단 신소재
	청주	'19.08 청주 서원구, 청원구 일원	2.85km ²	스마트IT부품·시스템
	구미	'20.08 구미 거의동, 신평동 등 일원	2.57km ²	스마트 제조 시스템
	홍릉	'20.08 서울 성북구, 동대문구 일원	1.38km ²	디지털 헬스케어
	울주	'20.08 울산 울주군 일원	3.01km ²	미래형 전지
	나주	'20.08 나주 빛가람동, 동수동 등 일원	1.69km ²	지능형 태양광·에너지저장
	군산	'20.08 군산 미룡동, 소룡동 등 일원	2.70km ²	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
	천안·아산	'20.08 천안 서북구 등, 아산 배방읍 등 일원	1.77km ²	차세대 자동차 부품
	인천	'22.06 인천 서구, 미추홀구, 연수구 등 일원	2.22km ²	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